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개선명령 및 권고의 목적 확대 및 개선명령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등 〉

■ 이연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558호)

2025. 2.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문위원 임 종 수

목 차

□ 이연회의원 대표발의(2206558)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개선명령 및 권고의 목적 확대 및 개선명령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등(안 제39조제1항제3호의3 및 제49조제5호 신설, 제51조제1항제13호 삭제)	3
가. 개정안의 내용	3
나. 검토의견	4
다.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 의견	10
1) 국토교통부	10
2) 한국통합물류협회	10
3) 한국생활물류택배서비스협회	11
4) 전국택배노동조합	11

□ 이연회의원 대표발의(2206558)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연회의원 등 20인
2. 제 안 일 : 2024. 12. 17.
3. 회 부 일 : 2024. 12. 1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택배서비스종사자 등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 택배서비스사업자에게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선명령의 목적 조문에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이나 보호 및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은 명시하지 아니함.

이러한 입법 공백으로 인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택배서비스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을 소극적으로 행사하고 있고, 설혹 개선명령을 하더라도 택배서비스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벌칙이 과태료에 불과하여 개선명령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벌칙 수위를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이나 보호 및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을 법문에 추가하여 개선명령의 목적을 명백히 밝히는

한편,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권익보호나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도 국토교통부장관이 택배서비스사업자에게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을 상향함으로써 택배서비스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안전한 종사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9조 등).

Ⅲ. 검토의견

1. 개선명령 및 권고의 목적 확대 및 개선명령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등(안 제39조제1항제3호의3 및 제49조제5호 신설, 제51조 제1항제13호 삭제)

가.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법 제39조에 따른 택배서비스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및 소
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에 대한 권고 사항에 생활물류서비스종
사자의 권익보호 및 치우개선을 위한 대책의 마련을 추가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택배서비스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39조(개선명령 및 권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생활물류서비스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u>소비자의 편의를 도모하기</u>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택배서비스사업자에게 명하거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39조(개선명령 및 권고) ----- ----- ----- <u>소비자의 편의를 도모</u> <u>하며,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u> <u>확보·권익보호 및 치우개선을</u> ----- ----- ----- ----- -----.

현행	개정안
1. ~ 3의2. (생략) <u><신설></u> 4. · 5. (생략) 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4. (생략) <u><신설></u> 제5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12. (생략) <u>13. 정당한 사유 없이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택배 서비스사업자</u> 14. (생략) ② (생략)	1. ~ 3의2. (현행과 같음) <u>3의3.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권익 보호 및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의 마련</u> 4. · 5. (현행과 같음) 제49조(벌칙) ----- ----- -----. 1. ~ 4. (현행과 같음) <u>5. 정당한 사유 없이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택배 서비스사업자</u> 제51조(과태료) ① ----- ----- -----. 1. ~ 12. (현행과 같음) <u><삭제></u> 1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나. 검토의견

택배기사 산업재해 신청건수가 2021년 458건, 2022년 상반기 287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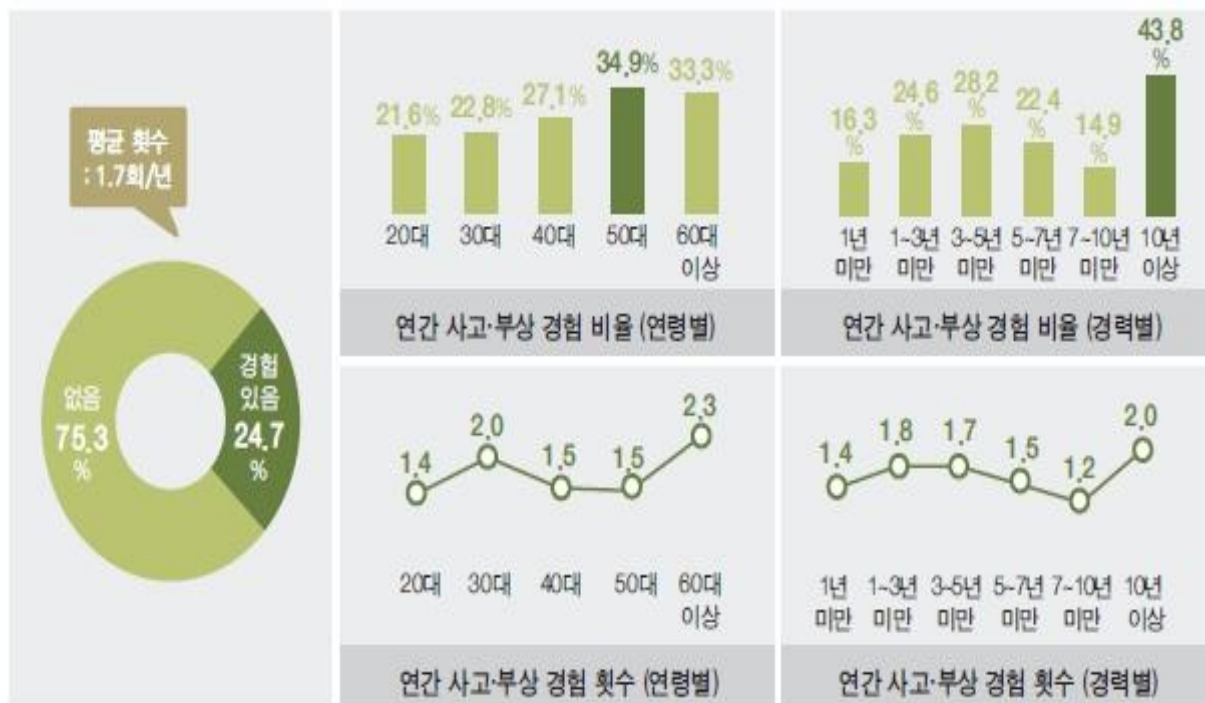
승인건수가 2021년 287건, 2022년 상반기 258건에 이르고, 배달대행종사자의 경우 2023 생활물류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연평균 1.7회의 사고·부상 경험이 있다고 조사된바,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 택배기사 산업재해 신청 및 승인 현황 】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상반기
산업재해 신청건수 (건)	76	119	177	458	287
산업재해 승인건수 (건)	70	106	160	417	258

출처 : 윤건영 의원실 보도자료(2022.9.21.)

【 배달대행종사자의 최근 1년 내 사고·부상 경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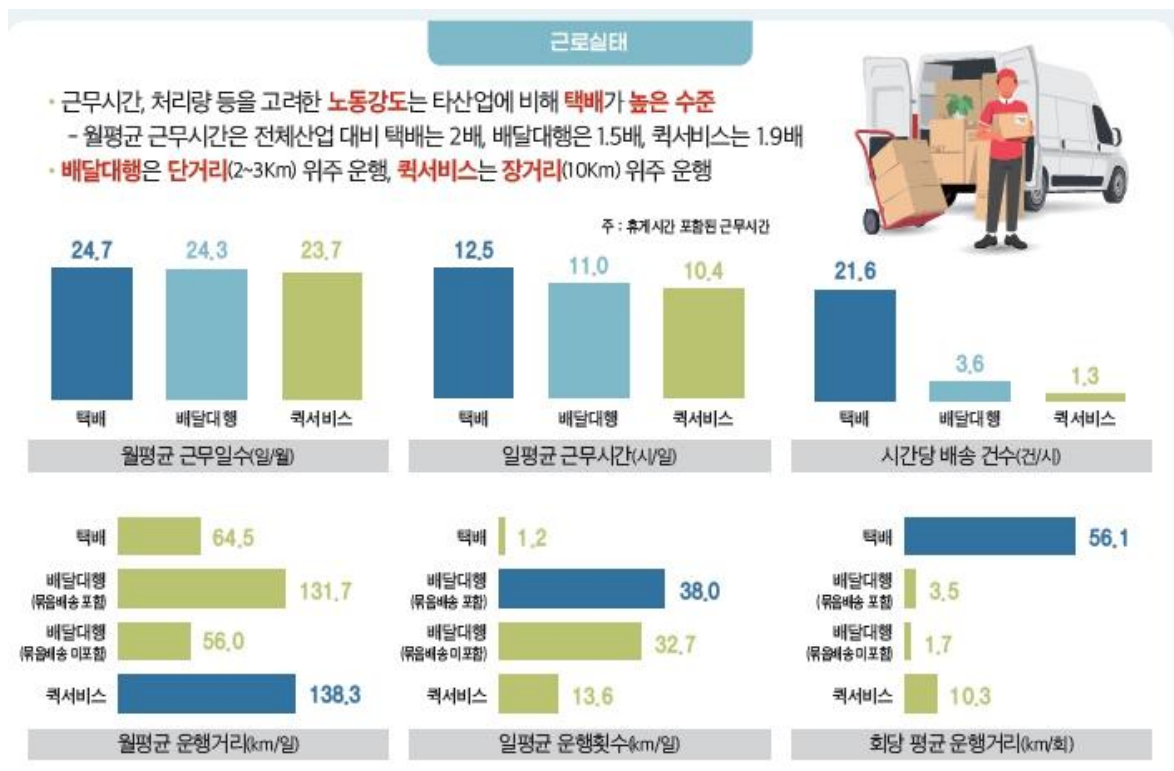


【 그림 3-35 】 최근 1년 내 사고·부상 경험 비율 및 횟수 (배달대행 종사자)

자료 : 국토교통부, 2023 생활물류실태조사 p.92

또한, 2023 생활물류 실태조사 상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근로실태를 살펴보면 택배서비스종사자는 일평균 12.5시간, 배달대행종사자는 일평균 11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되는 등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처우 개선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있음.

【 2023 생활물류 실태조사 상 종사자의 근로실태 】



자료 : 2023 생활물류 실태조사

이에 개정안은 택배서비스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및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에 대한 권고(법 제39조)의 목적에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확보·권익보호 및 처우개선을 추가하고,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권익보호 및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의 마련”을 개선명령 또는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를 보호하고 권익을 증진하려는 취지로 타당한 것으로 보임.

참고로, 현행법 제39조제5호 및 그에 따른 동법 시행령 제35조제1호¹⁾는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보호 및 처우 개선에 대하여 택배서비스사업자에게는 개선명령,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에게는 개선권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정안은 이를 상향입법하는 측면이 있음.

아울러, 현행법 상 택배서비스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제재가 충분하지 않아 그 실효성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안은 이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려는 것임.

1)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39조(개선명령 및 권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생활물류서비스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택배서비스사업자에게 명하거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4. 1. 9.>

5. 그 밖에 생활물류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5조(개선명령 및 권고의 내용) 법 제39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보호 및 처우 개선

다만, 2021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 이후 2025년 2월 현재까지 택배서비스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이 이루어진 사례가 없다는 점²⁾에서, 실제 개선명령이 이루어지고 그 이행 경과를 살펴본 후 개선명령 이행을, 타 업종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행 제재 수준의 적정성 및 강화 필요성을 판단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개선명령 위반에 대한 제재 관련 입법례를 살펴보면 개선명령위반에 대해서 징역 또는 벌금 등 형벌을 가하도록 하는 입법례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입법례가 각각 다수 존재함.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 등)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배출시설 또는 처리시설이 제1항 또는 제4항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운영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배출시설설치·운영자, 처리시설설치·운영자 또는 퇴비·액비를 살포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설이나 퇴비·액비 살포행위 등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제5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1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 또는 그의 배출시설·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로서 제17조제5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 ② 시·도지사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가 제1항에 따른 설치 및 관리 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그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의 개선을 명하거나 그 시설

2) 참고로 배달종사자와 계약 시 유상운송보험 가입 여부 확인절차 도입 권고(우아한청년들·쿠팡이츠, '24.7.29), 배달료 등 정산금 지급을 위한 재무능력 확충방안 마련 개선 권고(만나코퍼레이션, '24.8.7) 등 법 제39조에 따른 개선 권고는 2차례 이루어진 바 있음.

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제6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제29조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중지명령을 위반한 자

「도시철도법」

제39조(사업개선명령) 시·도지사는 도시교통의 원활화와 도시철도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시철도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 7. (생략)

제47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9조에 따른 사업개선명령을 위반한 자

「공중위생관리법」

제10조(위생지도 및 개선명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개선을 명할 수 있다.

1.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을 위반한 공중위생영업자

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생관리의무 등을 위반한 공중위생영업자

제22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5.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에 위반한 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7조(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목표관리) ⑥ 정부는 관리업체의 온실가스 감축 실적이 제1항에 따라 설정된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업체는 개선명령에 따른 개선계획을 작성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제8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27조제6항을 위반하여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개선명령) 고용노동부장관은 적정한 파견근로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파견사업주에게 근로자파견사업의 운영 및 파견근로자의 고용관리 등에 관한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제46조(과태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 제37조의 개선명령을 위반한 자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형법」³⁾에 따르면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가 과태료에서 형벌로 전환되는 경우 행위 시 법률에 따라 제재가 이루어져야 하는바, 안 부칙 제2조는 이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 의견

1) 국토교통부

종사자 권익보호 및 처우개선 대책마련에 대한 개선명령 등은 현행 법령에 따라서도 가능한 사안이나, 개선명령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실효성 있는 종사자 보호 등의 조치가 가능하므로, 개정 필요성에 동의함.

다만, 현행 법령상 개선명령 미이행 시 택배서비스사업자 등록취소까지 가능⁴⁾하므로 벌칙 상향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개선명령 미이행 시 등록취소를 규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관리법」(자동차관리사업) 등 유사입법례도 과태료 부과만을 규정하고 있어, 타 업종과의 형평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 한국통합물류협회

법 제39조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에 따라 ‘생활물류서비스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 ①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형법」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4)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15조(등록의 취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택배서비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4호, 제6호 또는 제7호의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8. 정당한 사유 없이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스종사자의 보호 및 처우 개선'이 이미 존재하여 현행법령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어 개정에 반대함.

또한, 동법 제15조 제8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택배서비스사업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로 작용하고 있어 형벌로 상향하는 것은 과도한 제재가 우려되므로 개정에 반대함.

3) 한국생활물류택배서비스협회

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처우 개선과 관련된 사항은 해석상 범위가 모호하여 계약 당사자 간 분쟁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될 소지가 크다는 점에서 제39조 개정에 신중할 필요가 있음.

또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로 판단되므로, 신중할 필요가 있음.

4) 전국택배노동조합

법안 개정 취지와 내용에 동의함.

문 의 처
02)6788-5580